

대법원 2017다46274 손해배상(기), 2018다41986 손해배상(기)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451)

[1] 2017다46274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2010. 11. 15.부터 2010. 12. 9. 사이에 원고 ○○자동차 주식회사의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하여 위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되자, 원고가 위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하는 사안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비정규직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함(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2] 2018다41986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2013. 7. 12. 원고 ○○자동차 주식회사의 공장 일부를 점거하여 63분간 그 공정을 중단시킨 데 대하여 원고가 이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종래 대법원은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

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하여 왔는데(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등), 이러한 추정 법리가 매출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기만 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는 등,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 추정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생산량이 회복되었더라도 이는 손해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않고 피고들의 생산량 회복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2017다46274

-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 11. 15.부터 2010. 12. 9. 사이에 원고 ○○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하여 위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됨
- 원고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 4명(A, B, C,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손해액 271억여 원 중 일부인 20억 원 청구)

나. 2018다41986

-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13. 7. 12. 그 조합원들로

하여금 원고 ○○자동차의 공장 내 의장 32라인 공정을 점거하도록 하여 위 공정이 63분간 중단됨

- 원고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들은 '자동차가 예약판매 방식으로 판매되고 원고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자동차의 인도일이 다소 늦어진다고 하여 바로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며, 쟁의행위 종료 후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통해 부족 생산량이 모두 회복되어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 바 없다'고 다투었음

2. 소송의 경과

가. 2017다46274

- 제1심: 원고 일부 승
 - 피고 C에 대한 청구 기각,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인용
- 원심: 원고 일부 승
 - 피고 C에 대하여 원금 전부 인용,¹⁾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 기각
 - 피고들의 위법한 쟁의행위 가담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20억 원)를 사실상 전부 인용함
 - 피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함

나. 2018다41986

- 제1심: 원고 패
 - 피고들의 쟁의행위 가담 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

1)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되어 사실상 원고 전부 승소

▣ 원심: 원고 일부 승

-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조업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고정 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고 책임제한(50%)을 거쳐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 생산량이 회복되었더라도 이는 손해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부족 생산량 만회 주장을 배척함
- 피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함

3. 대법원의 판단

● 판결 쟁점 이해를 위한 전제: 불법행위책임 판단의 단계

- ▣ [I] 책임 성립 단계: i) 피고들이 가담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넘고 + ii) 그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 피고들은 원칙적으로 다음 [II] 단계에서 인정되는 범위의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개별 피고들의 쟁의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주장·입증은 위 i) 단계에서 이루어짐
- ▣ [II] **책임 범위 단계**: i) 손해의 범위를 정한 다음 → ii) 손해의 공평한 분담 이념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여 → 최종적으로 배상할 손해를 확정함
 - 위 ii) 단계에서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음
- ▣ **이번 사건의 쟁점은 모두 [II] 책임 범위 단계의 문제임**
 - 2017다46274 사건의 책임 제한 개별화는 [II]-ii) 부분 쟁점임
 - 2018다41986 사건의 고정비용 부분은 [II]-i) 부분 쟁점임

● 2017다46274

나. 쟁점

▣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책임의 제한**

- 그 외 피고 C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에 관한 증거가 이루어졌는지, 이 사건 소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도 상고이유로 다투어졌으나, 대법원은 위 상고이유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이 사건의 경우 동일자 선고된 2018다41986 판결 등과 달리 쟁의행위 종료 후 부족 생산량이 회복되었다는 상고이유가 없고,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로 자동차 판매계약 취소에 따른 순이익 감소,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이러한 손해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다투는 상고이유가 있을 뿐이라는 특수성이 있음

위 상고이유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로 순이익 감소와 별도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발생을 추정하는 판례법리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 판결 결과

▣ 일부 파기환송(피고들 패소 부분)

라. 판단 근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 및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

- ▣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노동조합이고(제2조, 제37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대한 지도·관리·통제책임을 지며(제38조 제3항),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제41조 제1항)고 규정함

■ 노조법 제2조(정의)

6.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③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 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됨)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됨

(2) 기대가능성 결여 및 헌법상 단결권 등 약화 우려

-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그 실행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 일단 그 방침이 정해진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²⁾의 취지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2)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 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남

(3) 새로운 판시

▣ 따라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들이 비정규직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함

● 2018다41986

가. 쟁점

▣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판례의 추정법리(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 24735 판결 등)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경우, 쟁의행위 종료 후 근로자의 협력을 통해 추가 생산이 실시되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상당한 기간 안에 만회된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

- 그 외 이 사건 소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도 상고이유로 다투어졌으나, 기존 법리에 따라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판결 결과

▣ **일부 파기환송(피고들 패소 부분)**

다. 판단 근거

(1) 종전 대법원 판례의 추정 법리

▣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출하는 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하므로, 제조업체는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 및 그 생산 감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함이 원칙임

- 하지만 실제의 소송과정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그동안 대법원은 정상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적어도 지출한 고정비용 이상의 매출액을 얻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터 잡아, 그 제품이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하여 왔음(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등)

■ 기존 판례의 구조

- 제조업체가 손해발생(= 생산감소와 매출감소사실) 및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함
- 선례는 생산이 감소되면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추정함
- 다만 제품이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 간접반증사실을 증명하면 위와 같은 손해발생에 관한 추정을 깰 수 있음

(2) 새로운 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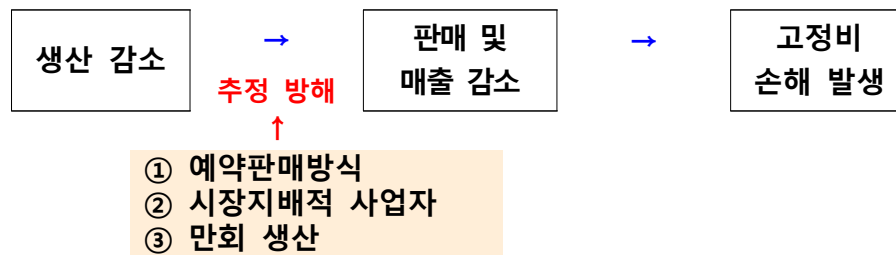
- 기존의 추정 법리가 매출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거나 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

■ 따라서 쟁의행위 종료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움

■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 [1] 판례는 경험칙에 근거해 조업중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고정비용이 지출된 사실 및 조업중단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사실과 같은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을 추정하여 왔음
- [2] 그러나 경험칙에 따라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해당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을 통해 추정을 깰 수 있음
- [3] 종래 대법원이 실시한 간접반증 사유들(적자제품, 불황, 하자 등) 외에도, 조업중단으로 생산이 감소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매출감소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간접반증 사유도 상정 가능함
- [4] 고정비용 손해는 조업중단으로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판매와 매출이 감소해 매출액에서 회수할 수 있었던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비로소 손해가 되는 것임. 또한 고정비용은 추가 생산으로 생산량을 만회한다고 하여 그에 비례하여 더 지출되는 것이 아님 → 이러한 고정비용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된 경우, 생산 감소에 따라 매출 감소를 추정하는 경험칙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 추정이 복멸된다고 봄이 타당함. [다만, 제조업체는 생산량 회복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다른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증명하여 다시 추정법리가 유지되도록 할 수 있음]
- [5] 자동차와 같이 예약판매방식으로 판매되거나 제조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생산이 다소 지연되어도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현대화된 기업환경에서 제조업체는 생산 차질에 대응해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생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을 여지가 있음 → 법원은 근로자에게 그러한 간접반증 사유에 대한 증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6] 이러한 생산량의 회복은 근로자들의 협력과 노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오로지 (피해자인) 사용자의 노력으로 손해가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4. 판결의 의의

● 2017다46274

- ▣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은 일정한 유형의 사안에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왔음(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³⁾ 등)

- ▣ 이 판결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본

3) 아래 선례를 인용하면서,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한 원심(대표이사 및 상임감사로 재직 한 사람의 책임을 40%, 상무이사의 책임을 20%, 이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함)을 수긍하였음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계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존 선례들의 연장선상에서, 제조업체가 위법한 행위에 가담한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개별 조합원 등의 책임제한 정도는 개별 조합원 등의 지위와 역할, 행위에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최초로 실시함**

- 노동조합법의 규정, 행위의 단체법적 성격, 개별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급박한 행위 상황에서 행위의 정당성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단결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점,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과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에 가담자마다 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등 노동쟁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조합원들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2018다41986

- 제조업체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추정 법리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사안에서, 행위로 종료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는 등, 행위로 생산이 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이 깨지게 된다고 최초로 실시함**
- 종전 판례가 실시한 간접반증 사유에 더하여 「생산 감소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될 경우에도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깨진다」고 봄으로써 고정비용 상당 손해 추정을 깨뜨리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였다는 의의가 있음